

광주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가단5455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권승현, 이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정지웅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 5. 2. 접수 제766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0. 25. 'C은 원고에게 56,386,88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476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C, D, E은 1985. 12.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5.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9. 5. 2. 접수 제76694호로 이 사건 토지 중 C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9.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와 C의 법률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C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 등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F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위토로 매수하여 종원인 C, D, E에게 그 중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서는 이 사건 종중이 C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1)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종중이 G파의 중시조인 H의 19세 I를 공동 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C, D, E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미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 실재하고 있었던 사실, ② C은 위 H의 21세손 J의 장남, D은 21세손 K의 장남, E은 21세손 L의 4남인 사실, ③ M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과수원을 운영하였는데, C, D, E은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종중의 총무였던 N가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에도 N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에 이 사건 종중의 대종중인 G파의 분묘들이 수십여 기 존재하는 사실, ⑤ 피고가 2014. 1. 10. 이 사건 토지 중 D의 1/3 지분에 관하여도 1995.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광주광역시가 피고를 상대로 D과 피고 사이의 위 1995. 4. 3.자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D의 1/3 지분은 이 사건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는 명의신탁재산의 회복 과정에서 중단단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제1심 :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06206, 항소심 : 같은 법원 2015나50091), ⑥ 피고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고, 이 사건 종중의 2020. 3. 29.자 임시회의에서 피고가 C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되어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 ⑦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현재는 사임하였다)에게 소송대리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 D,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종중이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간단계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피고가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C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명의신탁재산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C과 피고에게 원고 등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

목 록

광주 남구 O 답 4,655㎡. 끝.

1) 피고는 C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이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위 판결 취지에 맞게 선해한다.